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1999. 1. 18] 조례 제2433호

전부개정	2012. 6. 5	조례 제3048호
일부개정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일부개정	2013. 1. 10	조례 제3072호
일부개정	2013. 4. 1	조례 제3080호
일부개정	2013. 8. 12	조례 제3109호
일부개정	2014. 1. 6	조례 제3137호
일부개정	2014. 2. 14	조례 제3153호
일부개정	2014. 5. 23	조례 제3170호
전부개정	2015. 2. 22	조례 제3224호
일부개정	2015. 5. 6	조례 제3228호
일부개정	2016. 12. 21	조례 제3372호
일부개정	2017. 5. 17	조례 제3396호
일부개정	2017. 9. 14	조례 제3414호
일부개정	2018. 1. 3	조례 제3439호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5. 2	조례 제3462호
일부개정	2018. 12. 13	조례 제3520호
전부개정	2019. 3. 4	조례 제356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2. 21	조례 제3637호
일부개정	2020. 12. 24	조례 제3704호
일부개정	2021. 12. 24	조례 제3770호
일부개정	2022. 10. 5	조례 제3830호
일부개정	2023. 1. 6	조례 제3843호
일부개정	2024. 5. 2	조례 제395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 7. 4	조례 제3975호
일부개정	2025. 3. 6	조례 제40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연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3. 1. 6>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등)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6, 2024. 7. 4>

제2장 군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 산업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0. 2. 21, 2023. 1. 6, 2024. 7. 4>

제4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 6, 2024. 7. 4>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3. 1. 6, 개정 2024. 7. 4>

1. 군정의 기획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제·소송사무 지도 및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투자심사 전반에 관한 사항
4.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 6, 2024. 7. 4>

1. 평화협력 및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공모사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4. 주요 정책사업의 시설공사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군 정책 업무협의 등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④ 행정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1. 6, 2024. 7. 4>

1. 서무, 공인, 복무, 의전, 보안, 복무에 관한 사항
2. 인사, 조직, 교육, 포상,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선거, 행정구역,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과, 세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홍보 및 보도, 전산, 정보보호,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국가유산 관리, 체육진흥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회계, 결산, 계약, 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정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발급, 여권, 지적, 도로명주소, 인허가, 차량등록 등 민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4]

제6조(산업복지국) ① 산업복지국에 경제교통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산업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기획 및 교통시설,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의 지원 및 자활·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장애인,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6. 여성, 보육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 및 경영,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
8.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축산정책, 동물방역, 축산환경 등에 관한 사항
10. 산림보호 및 관리, 자연휴양림 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4]

제6조의2(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 및 복구,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안전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하천관리,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개발행위, 도시재생, 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대기환경 및 수질관리, 지하수 업무에 관한 사항
7. 청소,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4]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 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8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원장, 지소장, 진료소장을 둔다.

② 삭제 〈2020. 2. 21〉

③ 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9조(업무) ①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한다.

② 센터는 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139에 둔다.

③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부지소를 둔다.

④ 서부지소는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 800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전문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촌생활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수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3. 1.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또는 원장을 두며, 소장 또는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사업소별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 가. 상·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나. 상·하수도시설 확충
- 다.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 라.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관리
- 마.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 바. 하수도 준설 업무
-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및 관리업무
- 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 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무(하수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 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 카. 그 밖에 상·하수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 12. 24>

3. 통일평생교육원

- 가. 통일평생교육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관리
- 라.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 마. 학교 교육지원 및 장학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 사. 청소년 활동진흥·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아.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차. 그 밖에 평생학습, 교육청소년, 도서관, 장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개정 2023. 1.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부읍·면장) 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

② 부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1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 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6장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제20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746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1, 2020. 12. 24, 2021. 12. 24, 2023. 1. 6〉

1. 집행기관의 정원: 728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8명

제21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을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원·소장”을 “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단·원·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한다.

⑤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실장”을 “문화복지국장, 투자개발국장”으로 한다.

⑦ 연천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담당주사”를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담당주사”를 “예산팀장”으로 한다.

⑧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업무 담당”을 “법무팀장”으로 한다.

⑨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을 “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진흥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⑩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관실과”를 “소관부서”로 하고,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생략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2 <2019. 3. 4 조례 제3568호> 참조]

⑪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단·원·소장”을 “담당관, 과·원·소장”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⑫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난예방팀장”을 “방재시설팀장”으로, “재난예방팀”을 “방재시설팀”으로 한다.

⑬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재난예방팀장”을 “방재시설팀장”으로 한다.

⑭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⑮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투자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투자개발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⑯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복지지원과장, 농축산과장”을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⑰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연재난의 주관부처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하고, 사회재난의 주관부처란 중 ⑨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⑩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환경부”로, ⑬ “국민안전처”를 “소방방재청”으로, ⑳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㉑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㉒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㉓ “미래과학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자연재난의 주관부서란 중 “안전행정과”를 각각 “안전총괄과”로 하고, ㉔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㉕ “안전행정과”를 “안전총괄과”로, ㉖ “농축산과”를 “축산과”로, ㉗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㉘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㉙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㉚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⑱ 연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⑲ 연천군 통합방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투자개발국장”으로 한다.

㉑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㉒ 연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생활안정자금담당팀장”을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㉓ 연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지원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노인복지팀장”을 “노인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팀장”을 “노인정책팀장”으로 한다.

㉔ 연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㉕ 연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㉖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세무과장·지역경제과장”을 “문화복지국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㉗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

㉘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을 “행정담당관,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㉙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재팀장”을 “문화유산팀장”으로 한다.

㉚ 연천군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㉛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4호 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각각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관리팀장”을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요금팀장”을 “수질총량팀장”으로 한다.

㉔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㉕ 연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㉖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㉗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실장, 회계 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농축산과장, 도시주택 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진흥과장, 회계과장, 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㉙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㉛ 연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㉜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㉝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실·과·단”을 “담당관·과”로 한다.

㉞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연천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0. 2. 21 조례 제3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투자개발국장”을 “경제농정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군수”를 “경제농정국장”으로 한다.

③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생략 [연천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2 <2020. 2. 21 조례 제3637호> 참조]

④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군수”를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군수”를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진흥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과장, 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⑨ 연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⑪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⑭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⑳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⑩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투자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투자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투자진흥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0. 12. 24 조례 제3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②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③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한다.

⑥ 연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⑦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⑧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한다.

② 연천군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활동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39조”를 “제47조”로 한다.

부칙 <2022. 10. 5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6 조례 제3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를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폐(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로, “담당관·과장·원장·소장”을 “실장·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②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바목 중 “문화복지국”을 “행정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경제농정국”을 “산업도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③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농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산업도시국장”로 한다.

⑤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농정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한다.

⑬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안전도시국”을 “산업도시국”으로 한다.

⑮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과장”을 “인구정책사업실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⑯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을 “인구정책사업실장,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⑰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과장”을 “인구정책사업실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⑱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인구정책사업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인구정책사업실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인구정책사업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4. 5. 2 조례 제395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복지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산업도시국”을 “산업복지국”으로 한다.

②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구정책사업실장, 행정복지국장, 산업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을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③ 연천군 초성권역 김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인구정책사업실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④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인구정책사업실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⑤ 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인구정책사업실장, 행정복지국장, 산업도시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⑥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인구정책사업실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⑦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

제4조제2항 중 “인구정책사업실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인구정책사업실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⑧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도시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연천군 민·관·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⑩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⑪ 연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⑫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⑬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연천군 두루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⑮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⑯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⑰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산업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연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산업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연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⑳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㉑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장·국장·담당관·과장·원장·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한다.

㉒ 제9조제1항 중 “실장·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㉓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하여 지역경제과 내에”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원장·소장”을 “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경제과”를 “기업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㉔ 연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㉕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지역경제과”를 각각 “경제교통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지역경제과”를 각각 “경제교통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에너지 기능복구의 비고란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하고, 교통대책의 비고란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별표 5의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의 담당부서란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하고, 교통대책반의 담당부서란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㉖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㉗ 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㉘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5. 3. 6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2. 21〉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연천군보건의료원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 일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연천보건지소	연천군 연천읍 신망로15번길 30	연천읍 일원
연천군보건의료원 군남보건지소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417	군남면 일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청산보건지소	연천군 청산면 아우라지길 7-16	청산면 일원
연천군보건의료원 백학보건지소	연천군 백학면 두일로 157	백학면 일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왕산보건지소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 44	미산면, 왕징면 일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신서보건지소	연천군 신서면 도대로3번길 63	신서면 일원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남보건지소	연천군 장남면 장백로 244	장남면 일원
고문리 보건진료소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429	연천읍 고문1·2리 전곡읍 신답리
양원리 보건진료소	연천군 전곡읍 양원로46번길 13-5	양원리, 고능리
늘목리 보건진료소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594	간파리, 늘목1·2리
노곡리 보건진료소	연천군 백학면 진목로2번길 32	노곡1·2리, 학곡리, 구미리
마전리 보건진료소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 1325	마전리, 동이리, 아미1·2리, 삼화리, 유촌리, 백석리
동중리 보건진료소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 832-1	노동리, 동중리
횡산리 보건진료소	연천군 중면 궁중로 902	삼곶리, 횡산리

[별표 2] 〈개정 2020. 12. 24〉

사업소의 위치·명칭(제13조 관련)

명칭	위치
맑은물관리사업소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통일평생교육원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66번길 53

[별표 3]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위치	관할구역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02	연천읍 일원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45	전곡읍 일원
군남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417	군남면 일원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 71	청산면 일원
백학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백학면 청정로 534	백학면 일원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미산면 유노로 110	미산면 일원
왕징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왕징면 왕산로 44	왕징면 일원
신서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130	신서면 일원
중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중면 군중로 400	중면 일원
장남면 행정복지센터	연천군 장남면 장백로 244	장남면 일원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21조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 · 지도직 ·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개정 2022. 10.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0.8% 이내	5.6% 이내	25.4% 이내	32% 이내	26.8% 이내	9% 이상	0.4%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5% 이내	85% 이상	25% 이내	75%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50%	-	50%	-

[별표 6] <개정 2025. 3.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정원표(제22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746	413	18	127	51	43	94
정무직	소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소 계	713	405	18	103	50	43	94
	3 급	1	1					
	4 급	4	3		1			
	5 급	36	20	2	2	2	2	8
	6급 이하	672	381	16	100	48	41	86
전문경력관	소 계	2	1		1			
	전문경력관	2	1		1			
연구직	소 계	8	4		3	1		
	연구관							
	연구사	8	4		3	1		
지도직	소 계	20			20			
	지도관	3			3			
	지도사	17			17			
별정직	소 계	2	2					
	6급상당	1	1					
	8급상당	1	1					